

● 제300회 ●
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
제3차 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2021. 4. 28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수 석 전 문 위 원

【 김경우 의원 대표발의 】

의안번호 2309

I. 조례안 개요

1. 발의자 및 제안경과

- 가. 발 의 자 : 김경우 의원 외 19명
- 나. 발 의 일 : 2021. 04. 02.
- 다. 회 부 일 : 2021. 04. 06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개정사항을 반영하여, 결산기한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에서 2개월 이내로 변경하고자 함.
-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명시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재단의 결산서류 제출기한을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로 규정함 (안제16조제3항)
-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예산서 및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. (안제16조제4항 신설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,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
- 나. 예산조치 : 비대상사유서 별첨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II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문성)

1 조례안의 개요

- 개정안은 2020년 6월부터 시행된 「지방출자출연법」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(이하 ‘재단’)의 결산서 제출기한을 회계종료 2개월로 앞당기려는 내용임.
- 또한,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예산서 및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2 주요사항 검토

가. 결산서 제출 기한 변경

- 개정안은 현행 재단의 결산서 제출기한이 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였던 것을 2개월 이내로 변경하려는 것으로, 이는 개정된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9조¹⁾를 반영하려는 것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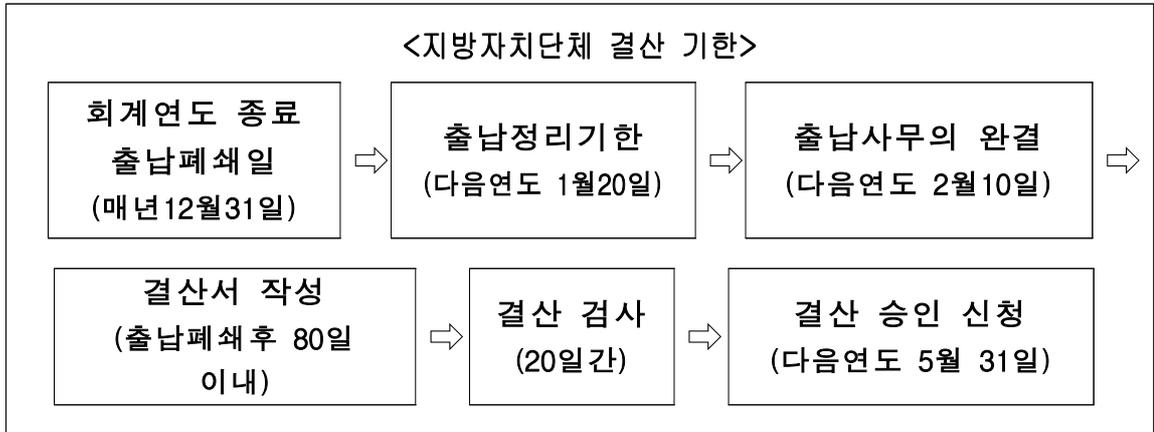
1)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9조(결산) 출자·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자산총액, 부채규모, 종업원 수, 수익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출자·출연 기관은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12. 3.>

부칙 제5조(결산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)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결산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현행	개정안
제15조 (사업계획서, 결산서 등의 제출) ①·② (생략) ③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<u>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</u> 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1. 2. (생략)	제15조 (사업계획서, 결산서 등의 제출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<u>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</u> ----- -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

- 현재 「지방회계법」 제7조²⁾에서 해당 회계연도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하고, 출납 사무는 다음 회계연도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, 따라서 서울시의회의에의 결산 승인 신청은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있음.

2) 「지방회계법」 제7조(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. 다만,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에 포함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 연도 1월 20일까지 수입 또는 지출 처리를 할 수 있다.
 1.~3. (생략)
 ② (생략)
 ③ 해당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·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회계연도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.



- 이에 동 개정안에 따라 재단의 결산서 작성 기한을 기존의 3개월에서 2개월로 변경하는 것은 서울시의 결산 사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타당하다할 것임.

나.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의무

- 서울시의 출자·출연기관을 총괄하는 조례인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2조의2³⁾에서 이미 출자·출연기관의 예산서와 결산서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본 개정안은 해당내용을 서울시 출자·출연기관인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운영 조례에도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3)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2(예산 및 결산의 제출 등) ① 출자·출연기관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출자·출연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1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출자·출연기관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보고시기가 폐회 중일 때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한다.

3 종합 의견

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인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결산서 작성 기한을 기존의 3개월에서 2개월로 변경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결산 사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음.
- 또한, 관련 조례인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서울시의 출자·출연 기관에 속하는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운영을 위한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체계적인 재단 운영을 위해 적합한 개정이라고 사료됨.

문 의 처

도미화 입법조사관 (02-2180-8147)